의안 번호	84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순규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의 원 : 문순규・감규상・김인애・성보빈・심임숙 오춘근・이우완・이정희・정순욱・차중현 홍용채 의원(11명)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나. 소상공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다. 소상공인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원사업 가점 부여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3)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를 “창원시”로, “균형있”을 “균형 있”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상담·자문·교육”을 “상담·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 마케팅, 세무·회계, 노무·법률, 디지털 전환 등 역량 강화 교육
2. 업종전환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3(교육 이수자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창원시---------- ---------- ---------- ---------- ---------- ------ 균형 있---------- ----------.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 ---------- ---------- ---------- ---.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자문·교육에 대한 사항	1. ---------- -상담·자문----------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2(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 마케팅, 세무・회계, 노무・법률, 디지털 전환 등 역량 강화 교육 2. 업종전환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3(교육 이수자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참고 **관계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능력 향상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착한가격업소”란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자문·교육에 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개선 및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정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자금지원 및 지원대상)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9조(지원범위) 제7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제10조(특별지원) 시장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3.5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2. 종량제봉투 등의 지원

제11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워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려면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3조(업무협약에 대한 통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매월 지원한 내역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소규모상가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2.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2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2.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제24조(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문순규 의원발의** 예정인「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 요

○ 조 례 명 :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문순규 시의원(산업경제복지위원회)

○ 상정시기 : 제156회 임시회

○ 제안사유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2 주 요 내 용

구 분	조 항		주요내용
신 설 (2)	제6조의2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교육 추진 근거 명시** - 횟수(1회 이상), 종류, 방법 등
	제6조의3	교육 이수자에 대한 우대	◆ **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부여 근거 마련**
수 정 (2)	제1조	목적	◆ **위임 규정 삭제** - 자치조례로 상위법 위임 부재
	제6조 1항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 **문구 일부(교육) 삭제** - 제6조의2 별도 신설
삭 제 (2)	제6조 3항	민간위탁 운영 절차 및 방법	◆ 관련 조례의 내용을 재기재한 것으로 **불필요한 내용 삭제**
	제22조	위원회 수당 등	◆ 관련 조례의 내용을 재기재한 것으로 **불필요한 내용 삭제**

3 검 토 내 용

□ 관련법령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입법 필요성 : 필요성 있음

○ 2025년 기준, **전국 폐업 사업자 수 약 97만 개소**로 **폐업률 약 8.64%**이며 도·소매업, 음식업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주요 6대 업종**의 **폐업자 수는 약 75만 개소(전체 폐업자의 77%)로 폐업률 약 11.08%**

- 소상공인이 특히 밀접해있는 소매업 폐업률 15.4%, 음식업 폐업률 15.14%

○ 창원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주로 단순 현금성 지원사업**이 많으며, **창업 및 역량강화 사업**은 청년 등 **대상자가 한정적**임

○ 중·장년층이 소상공인의 7~80%를 차지하는 만큼, **소상공인 전반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자생력 향상 및 적극적인 경영안정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교육과 정책 연계** 필요

□ 전부서 의견 조회

○ 예산담당관 : 조례개정 목적에 맞게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한정하고, 직접 지원(현금성)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소요예산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제외사유 : 예상비용 연평균 1억 원 미만

4 부서의견 : 수 용

○ 본 조례는 소상공인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의원원안)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부서검토의견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검토 의견

의원 발의안	부서 검토안	검토의견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원안과 동일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자문에 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개선 및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정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원안과 동일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6조의2(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 마케팅, 세무·회계, 노무·법률, 디지털 전환 등 역량 강화 교육 2. 업종전환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원안과 동일	
제6조의3(교육 이수자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원안과 동일	
제22조(수당 등) <삭 제>	○ 원안과 동일	

붙 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제6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창원시 의원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장 홍성호